

의안번호	2202691
의 퇴 인	부승찬의원
회 답 일	2024.08.16.
추계번호	24D2688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79조의4 신설 (법률안에 대한 입법영 향분석의 요 구 및 분석 서 제출)	-국회의 위원회(소위원회 포함) 또는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(제1항) -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만료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함(제2항) -의원은 회신받은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 심사 만료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, 해당 위원회는 법률안 검토 시 제출된 입법영향분석서를 참조하여야 함(제3항) -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범위, 입법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제79조의4 신설 (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·제출하는 경우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발생 가능¹⁾

□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범위,

1) 행정부의 경우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7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각각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있음.

입법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 법률안 수 및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관 부서의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의원 및 위원회의 의안 건수는 제19대 국회 18,926건, 제20대 국회 25,221건, 제21대 국회 25,027건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음

- 이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